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49 무고
피 고 인	A
검 사	이철호(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준혁
판 결 선 고	2019. 10.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 B에서 'C가 2017. 9. 15.경 대구 동구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만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준강간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계속하여 위 사건을 담당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3

게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고, 2017. 9. 28.경 같은 내용의 고소장까지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지 아니하였고 자의로 C과 함께 모텔에 갔으며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C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피고소인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3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준강간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무고인을 처벌하고자 피무고인을 고소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1) 피고인과 피무고인은 2017. 9. 14.경 피무고인의 직장동료인 F와 그의 지인인 G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피고인과 피무고인, F, G은 술자리를 가진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노래방 내에서 피고인과 피무고인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다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3

합의 하에 모텔로 가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무고인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거나, 피고인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에 들어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오히려 당시 모텔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접객 중이던 증인 H은 피고인과 피무고인이 투숙할 당시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3) 피무고인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정황, 그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정황에 대하여 준강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일관되고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피무고인과 숙박시설에서 성관계를 갖고 난 뒤, 피고인과 피무고인은 함께 모텔에서 나왔고, 피무고인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I 어플에 입력하고 택시를 부르기도 하였다.

4) 다음날 피고인이 잠에서 깬 후,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G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의 통화는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거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이 아니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미쳤나 보다'라는 정도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무고인과 성관계를 한 때로부터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2017. 9. 22.경 피무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피무고인을 고소하기 약 4일 전인 2017. 9. 18.경 피무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내가 너거 년놈들 다 씹어먹는다. 지난 목요일 니가 조진년 남편이다. 내손으로 잡았서 쳐 넣을끼다. 개세끼야"등의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 즉, 피고인이 B에 이 사건을 신고한 것은, 기혼자인 피고인이 피무고인과의 관계를 자신의 남편에게 들킨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3

6)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피무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들킨 시점(2019. 9. 16. 경)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에도 피고인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7) 피고인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의 기억을 잃은 것과 피고인이 피무고인의 행위가 성범죄임을 확신하고 이를 신고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인은 당일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을 떠올려보았고, 함께 현장에 있었던 G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성범죄를 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무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 행위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성범죄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무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무고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여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무고인이 엄벌을 구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13

판사 김태환 _____